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1나236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20252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증여의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 1) C은 2008. 2.경부터 대구 D단체에서 E일거리창출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재단법인 F에서 운영하는 G클럽에서 E일거리창출사업 등 보조금사업 관리 및 회계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하였다.
- 2)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C의 부동산 처분

- 1) C은 2018. 3. 14. V에게 대구 달성군 W아파트 X호(이하 'W 아파트'라고 한다)를 186,5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3. 16.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8. 3. 14. 매매대금 중 1,000,000원을 V으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Y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다음 이를 피고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고, 2018. 3. 16. 매매대금 ㉠ 36,695,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다.
- 2) 또한 C은 2018. 3. 20. H에게 대구 동구 I 소재 J아파트 K호(이하 'J 아파트'라고 한다)를 516,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8. 3. 16. H로부터 매매대금 중 ㉡ 2,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고,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Z

계좌를 통해 2018. 3. 22. 합계 ③ 100,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 2018. 3. 23. 합계 ③ 63,730,000원(= 50,000,000원 + 13,730,000원), 2018. 4. 6. ③ 6,351,88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피고는 2018. 3. 22. L과 M으로부터 대구 동구 I 소재 J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0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8.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대금 중 2018. 3. 22. 40,000,000원 및 2018. 3. 28. 5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L에게 지급하였다.

라. C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

1) C은 2018. 4. 24. '2008. 5. 2.부터 2018. 3. 6.까지 보조금의 소유자 및 위탁자인 피해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E일거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1,920,249,451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8. 7. 13.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68호)에서 징역 3년, 추징금 817,63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C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2019. 2. 12.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18노334호)은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횡령 범행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2.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678호)에서 'C은 원고에게 횡령금 중 미변제한 767,630,908원(= 817,630,908원 - 2018. 7. 5.자 변제금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2020. 11. 2.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 Z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공금횡령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 C이 자신이 소유한 J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아파트 매도대금 ㉠ 2018. 3. 22.자 100,000,000원 및 ㉡ 2018. 3. 23.자 63,730,000원 합계 163,730,000원 중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90,000,000원과 현금으로 인출한 3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부분은, C이 피고에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로서 무효이거나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제시한 별지 기재 각 증여내역에 불분명한 점이 다소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취지는 채무자인 C이 자신이 받을 자금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데에 있고, 반면 C이 입금한 위 자금을 피고가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재산을 사후에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실제로는 C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8. 3. 22.자 100,000,000원 송금행위, 2018. 3. 20.자 63,730,000원 송금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 금액 중에서 피고가 L에게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공모의사가 추단될 여지가 있는 합계 120,000,00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택하였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C이 J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 2018. 3. 22. 100,000,000원, ㉡ 2018. 3. 23. 63,73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2018. 3. 22. 40,000,000원, 2018. 3. 28. 50,000,000원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3. 38.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 및 ㉡과 같이 J 아파트 매도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거나,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이 W 아파트 및 J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C과 피고는 1992. 11. 7. 혼인한 부부로서 30년간 동거하며 생활해왔고 피고는 주식회사 A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고정적인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W 아파트 및 J 아파트가 취득 당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아파트 또는 그 매도대금이 모두 C의 단독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실제로 J 아파트 취득 당시 피고는 매수대금 중 119,000,000원을 부담한 바 있으므로, C이 W 아파트를 매도하는 기회에 그 매도대금 일부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에 대한 지분반환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④ 피고는 C을 위하여 채무변제에 49,892,750원(= 2018. 3. 14. AC에 대한 채무 변제액 25,000,000원 + 2018. 3. 19. A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E에 대한 채무 변제액 24,892,750원), 변호사보수로 27,800,000원(= 2018. 3. 10. 5,800,000원 + 2018. 3. 15. 11,000,000원 + 2018. 4. 5. 4,400,000원 + 2018. 4. 19. 6,600,000원), 원고에 대한 공탁금으로 100,000,000원(= 2018. 4. 5. 50,000,000원 + 2018. 7. 5. 50,000,0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돈 중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은 피고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C과 피고의 관계,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아파트 매도대금 총 208,776,880원(=㉠+㉡+㉢+㉣+㉤)의 입금 명목이나 사용처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증여로서 입금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김형호, 판사 박경모

(별 지 1)

 의 피고

 에 대한 금전 증여 내역

순번	증여일자	금 액	거래 내역 / 방법	증여액 특정
1	2018. 3. 22	4,000만 원	2018. 3. 20. ()에게 매도한 호 매매대금 중 공인중개사 계좌에서 피고 의 계좌로 2018. 3. 22. 입금된 1억 원 중 위 같은 날 피고 이 매수한 호 매도인 에게 직접 송금한 계약금 4,000만 원	4,000만 원
2	2018. 3. 28	5,000만 원	위 제1항의 금액 및 2018. 3. 20. ()에게 매도한 호 매매대금 중 공인중개사 계좌에서 피고 의 계좌로 2018. 3. 23. 입금된 6,373만 원 중 2018. 3. 28. 피고 이 매수한 호 매도인 에게 직접 송금한 잔금 5,000만 원	5,000만 원
3	2018. 3. 28	3,000만 원	위 제1항 및 제2항의 각 금액에서 2018. 3. 28. 피고 이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 원	3,000만 원
합 계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1. 계좌 : # 2. 계좌 : 기업은행 끝.

별지2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아파트 S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T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세대전용다용도실 91.05㎡

1층 공동주택(아파트) 372.68㎡

2층 공동주택(아파트) 354.81㎡

3층 내지 21층 공동주택(아파트) 각 446.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I 대 92,15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U 철근콘크리트구조 84.8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2,152.1분의 50.07. 끝.

